

영등포구의회  
제12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06. 11. 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6. 10. 24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제정(제안)이유

-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7.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를 설치함 (안 제3조)
-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 국가 및 서울시 출연·보조·용자금 등으로 함 (안 제4조)
-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부지매입,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위하여 사용함 (안 제5조)

## 관련법규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2006.1.11 제정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6.7.11 제정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및 은평구, 강서구, 강동구 등

## 검토의견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1.11공포, 2006.7.12시행)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제4조제4항에 의하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 **안 제4조** 특별회계의 세입은
  -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
  -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위임수수료
  - 국가 및 서울시의 출연·보조·용자금이며,
- **안 제5조** 특별회계의 세출은
  -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 이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 11. 3

보고자 : 이 남 식